

나.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

2) 공공시설

■ 관리분소

번호	시설명	위치	부지면적 (㎡)	건폐율 (%)	높이 (m)	동수	비고
	소계	기정	2개소	3,000	-	-	-
		변경	3개소	4,171	-	-	-
3	건천분소	기정	-	-	-	-	신설
		변경	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402-1번지 일원	1,171	60 이하	10	

< 공원계획 변경 조건 >

-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

6. 기존시설의 준치·이전·철거·개수계획 : 변경 없음

7. 공원관리계획 : 변경 없음

8. 공원계획 변경도 : 도면 생략

9. 기타 : 관계도서를 경주국립공원사무소(054-778-4100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● 환경부고시제2019-27호

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

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월 24일

환 경 부 장 관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

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)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살생물물질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재검토기한)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고시 시행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(제2조 관련)

순번	살생물물질명	CAS 번호
1	젖산(Lactic acid, C ₃ H ₆ O ₃)	50-21-5
2	아세트산 나트륨(Sodium acetate, C ₂ H ₃ NaO ₂)	127-09-3
3	벤조산 나트륨(Sodium benzoate, C ₇ H ₅ NaO ₂)	532-32-1
4	(+)-타르타르산((+)-Tartaric acid, C ₄ H ₆ O ₆)	87-69-4
5	아세트산(Acetic acid, C ₂ H ₄ O ₂)	64-19-7
6	프로피온산(Propionic acid, C ₃ H ₆ O ₂)	79-09-4
7	아스코르브산(Ascorbic acid, C ₆ H ₈ O ₆)	50-81-7

8	린시드 오일 또는 아마씨유(Linseed oil)	8001-26-1
9	라벤더 오일(Lavender oil)	8000-28-0
10	페퍼민트 오일(Peppermint oil)	8006-90-4
11	1-옥텐-3-올(1-Octen-3-ol 또는 Oct-1-en-3-ol, C ₈ H ₁₆ O)	3391-86-4
12	옷좀나방 페로몬(Webbing clothes moths pheromone)	
13	이산화탄소(Carbon dioxide, CO ₂)	124-38-9
14	질소(Nitrogen, N ₂)	7727-37-9
15	(Z,E)-테트라데카-9,12-다이에닐 아세테이트 (Z,E)-Tetradeca-9,12-dienyl acetate, C ₁₆ H ₂₈ O ₂)	31654-77-0
16	바큘로바이러스(Baculovirus)	
17	벤토나이트(Bentonite)	1302-78-9
18	시트로넬랄(Citronellal, C ₁₀ H ₁₈ O)	106-23-0
19	황산 철(II)(Iron(II) sulphate)	7720-78-7 7782-63-0 13463-43-9

●여성가족부고시제2019-3호

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월 24일

여성가족부장관

1.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: 아래 목록표와 같음

2. 의무사항

- 가.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.
- 나.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.
- 다.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·대여·배포하거나 시청·관람·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.
- 라.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·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.

3. 벌칙내용

- 가.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(동법 제59조 제1호)
- 나. 포장의무 위반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(동법 제59조 제2호)
- 다. 판매금지 등의 위반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동법 제58조 제1호)
- 라. 구분·격리 등의 위반 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(동법 제64조 제2호)

청소년유해매체물(간행물)목록표

【도 서】

일련번호	서명	저자	출판사/수입자	출판연월일	심 의 · 결정기관	심의번호	결정연월일	결정사유	고시의 효력발생일
2019-156	나의 아름다운 선	조강은	파란미디어	2018-10-11	간행물윤리위원회	1910001	2019-01-04	선정성	2019-01-31
2019-157	꽃눈이 지다(상)	무연	주)로크미디어	2018-12-20	간행물윤리위원회	1910002	2019-01-04	선정성	2019-01-24
2019-158	꽃눈이 지다(하)	무연	주)로크미디어	2018-12-20	간행물윤리위원회	1910003	2019-01-04	선정성	2019-01-24